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8.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0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범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3차 정무위원회 (2025. 2.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민수의원)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사
용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8.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법
률(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16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
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
는 자에게 거래정보등
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u>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 ----- --<u>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u>----- ---. ----- ----- -----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	---------------------	--

□ 현행법 제4조제1항¹⁾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종사자로 하여금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에게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조제4항²⁾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거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가. ~ 다.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 마. (생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나. (생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나. (생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④ 제1항 각 호[중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법 제6조제1항³⁾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이 법 제4조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과 별칙인 제6조제1항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⁴⁾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억지력을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음.

○ 그러나, 현대사회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만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고, 단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제재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유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인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음.

□ 이에 개정안은 법 제4조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이정문의원안은 법 제4조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을 삭제하려는 반면, 한민수의원안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되지만,⁵⁾ 법률의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개정을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반 국민이 위헌 결정의 취지를 알기 쉽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정문의원안과 같이 법 제4조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을 삭제할지, 한민수의원안과 같이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로 금지·처벌 대상을 제한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반대의견(헌법재판관 이선애)은 강요나 협박, 기망 등을 통해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실제 거래정보를 누설·제공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정보등의 요구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구체적인 법 적용에 있어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 금융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⁶⁾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

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6)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시의 수단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허위·부정한 진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불법적 수단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이정문의원안은 법 제4조제1항 중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만을 삭제하고자 하나,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의 금지·처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에서 거래정보를 알게된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의 일률적 금지 및 처벌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민수의 원안과 같이 법 제4조제1항과 제4조제4항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자구상의 수정사항으로, 한민수의원안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허위·부정한 진술 등 서류 외의 다른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⁷⁾

술을 하거나 변조·위조·부정취득된 문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의 내용이 금융거래의 비밀과 관계가 없어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등에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유해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